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39-14



www.acrc.go.kr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제1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관 1

제2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문별 해설 5

제1조(목적)	6
제2조(정의)	7
제3조(적용 범위 등)	11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2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5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17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22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26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32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34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36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9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51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63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71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73
제18조(성희롱 금지)	78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80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88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92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93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97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에 관한 권고)	99

제3장

관련 법령 등 101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전문)	102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	113
3. 「공무원 행동강령」(전문)	141
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전문)	15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1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관

제1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관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 제정 배경

- 지방의회의원도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2003. 5. 19. 시행)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 「공무원 행동강령」이 주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이를 직접 적용하는 데 한계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기준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 제기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연혁

- 행동강령 제정('10. 11. 2.)·시행('11. 2. 3.)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마련

※ 총 6장 24개 조문, 15개 행위기준 규정(이해관계 직무 회피, 금품 수수 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

- 행동강령 제1차 개정('16. 9. 27.)·시행('16. 9. 28.)
 - '16.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금품등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을 수정·보완
 - ※ 총 6장 23개 조문, 14개 행위기준 규정(의원 간 금품등 수수를 금지한 기존의 제12조 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개정 제11조 규정에 통합)
- 행동강령 제2차 개정('18. 12. 24.)·시행('19. 3. 25.)
 - 갑질 금지,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 신설
 - ※ 총 6장 30개 조문, 21개 행위기준 규정(사적 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7개 조문 신설, 2개 조문 개정)
- 행동강령 제3차 개정('20. 4. 7.)·시행('20. 5. 27.)
 - 외부강의등 신고 제도 관련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반영
- 행동강령 제4차 개정·시행('22. 6.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규정 삭제
 - ※ 총 6장 23개 조문, 14개 행위기준 규정(사적 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 제한 등 7개 조문 삭제)

3 구성 및 행위기준

- 구성 : 총 6장 23개 조문, 14개 행위기준으로 구성
 - 제1장 총칙 : 제정목적, 직무관련자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
 - 제2장 행위기준 :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3개)
 - 제3장 행위기준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6개)
 - 제4장 행위기준 :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5개)
 - 제5장, 제6장 이행체계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3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6개)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5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5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6조)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제7조)	-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8조) -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8조의2)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9조) - 사적노무 요구 금지(제10조의2)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제10조의3)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1조)	- 국내외 활동 제한 등(제13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4조) - 영리행위의 신고(제15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7조) - 성희롱 금지(제18조)



제2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문별 해설

제2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문별 해설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내용 해설

-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및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2010. 11. 2. 제정되어 2011. 2. 3. 시행

☐ 참고 사항 : 행동강령 시행·운영 관련 법령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기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 행위의 신고·처리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6. 9. 27.>

2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전문별 해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도입 배경

- 의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적인 신분을 가짐과 동시에 개인적 친분·혈연적 관계 등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인격체로서, 공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

- 의원의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직무관련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위반행위* 예방

*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내용 해설

가. 직무관련자 :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의원에 대하여 직무상 열후적 지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소위 甲-乙 관계에 있어서의 ‘乙’을 의미)

- ‘직무’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의미하며, 제1호 ‘가’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

-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는 개별 의원의 직무 내용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제1호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그 대리인을 포함하는 개념
- 의원(A)의 직무관련자(C)에 대한 업무 처리 방향과 결과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의원(B)도 해당 의원의 직무관련자(C)와 직무관련자 관계 성립

- 지방자치단체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행동강령상 기관·단체의 구분은 행동강령의 제정 단위에 의하므로 교육청의 경우 본청은 물론 동일한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소속 내 교육지원청과 학교도 포함

- 제1호 ‘다’목 규정에 근거하여 의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직무관련자로 추가 지정 가능

〈예시〉 ○○유치위원회, ○○조합, ○○작목반, ○○사업자, ○○번영회 등

기관별 직무관련자 규정 사례

- 재판, 형집행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검찰청)
-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사·심사·의결 중인 개인 또는 단체,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개인 또는 단체, 공정거래법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와 관련한 신고자 또는 제보자(공정거래위원회)
-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종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 훈·포상 심사 대상자 및 대상협의회(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경찰관서에 복무중인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의 부모·형제자매(경찰청)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및 취소, 인원의 배정,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취소, 복무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병무청)
-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조달청)
-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방송통신위원회)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 대행자 및 대상사업 시행자(환경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해당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등(국민권익위원회)

나. 금품등 : 금전, 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및 채무 면제·취업 제공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

○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과 이에 준하는 것

○ 접대·향응 및 편의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과 이에 준하는 것

※ 취업 제공 : 직위·직책 여부 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처리,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취업’으로 봄

■ 질의·답변

Q 제2조제1호 가목 중 ‘직무수행’의 범위는?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란 해당 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임.

Q 제2조제1호 나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말하며, 교육청의 경우 본청은 물론 동일한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소속 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가 모두 포함됨.

■ 참고 사항

[판례] 유가증권 여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 <2016. 9. 27.>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 내용 해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됨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 중 의원직을 사직·퇴직·상실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의원이 다시 의원의 신분을 가지게 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질의·답변



A의원이 제7대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임 중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난 경우 A의원에게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 ① A의원이 제7대 지방의회를 끝으로 의원직을 다시 가지지 않은 경우 : 종결
- ② A의원이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다시 의원직을 가지게 된 경우 : A의원의 제7대 지방의회 재임 당시 행동강령 위반사건에 대하여 제8대 지방의회에서 처리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도입 배경

-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 예산의 편법·부당 사용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업무 내용 왜곡 등의 부적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직무 공정성 제고

▣ 내용 해설

- 의원은 여비·업무추진비·인건비·수당·사업비 등 모든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됨
※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②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예산에 계상된 내역·용도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허위·과다 청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 ‘재산상 손해’는 소속 기관의 재산적 이익 또는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키는 등의 일체의 손해를 의미

▣ 관련 사례

- ▶ △△시의회 A의원은 1년여 기간 동안 직무와 관련 없는 유흥주점에서 6회에 걸쳐 총 398천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
- ▶ △△구의회 A의장 등 2명은 지역 언론 관계자에게 화장품세트 등을 명절선물로 제공하는 등 총1,629천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

- ▶ △△시의회 A의장은 지역 기관장 모임인 ‘○○지역 발전협의회’ 연회비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
- ▶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다른 법령에 근거 없이 의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소속 의회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
- ▶ △△시의회 A의원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기부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연대에 현금 10만원을 기준 외로 집행하여 소속 의회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
- ▶ △△시의회 A의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인 직무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속 직원 격려 명목으로 복수의 지역 언론사가 발행하는 공연 티켓을 총 10회(428만원)에 걸쳐 구입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
- ▶ △△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전용차량(또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였음에도 여비를 감액하지 않는 등으로 여비를 초과 지급받았음
- ▶ △△시의회 A의장은 2012년 1월부터 6개월 간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의 식사 등으로 총 20건 11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
- ▶ △△군의회가 소속 의원들에게 40만원이 넘는 순금 뱃지를 교부,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과 여론의 집중적 비판
- ▶ △△시의회 A의원은 해외체류기간 중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지내 출장을 상실토록 하여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 △△구의회 A의장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매월 100만원 안팎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한편, 관용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심지어 마트에서의 식료를 구매할 때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
- ▶ △△시의회 A의원은公款 9,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

■ 질의·답변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 연수를 가서 자비가 아닌 공통 경비를 사용하여 유흥업소를 출입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는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의원들이 예산을 사용하여 유흥업소에 출입하였다면(즉, 사용한 공통 경비가 예산인 경우) 동 규정 위반에 해당할 것임. 다만,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각급 기관·단체장들의 자발적 모임(○○기관장 협의회, △△회 등)의 연회비를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사적 친목 도모 목적의 임의단체 회비는 원칙적으로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함.

※ 법령 등에 설립근거가 없는 사적 임의단체의 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 참고 사항

○ 클린카드 제도

♦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 골프장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함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 시간대 등)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권익위에서 권고한('07.10월, '11.10월, '14.10월)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서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의무적 제한업종

①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②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③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④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제6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도입 배경

- 의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 인사청탁과 연계된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 등의 부당 행위 방지

☒ 내용 해설

- 직위 이용 : 의원 신분이나 소관 업무 등에 기인한 영향력 행사
- 직무관련자 :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직무관련자
- 인사 : 임용·승진·전보는 물론 포상·징계·시험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
- 위반 여부 판단 : 의원이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위반 행위가 성립하며 개입의 결과가 실현될 것을 요하지 않음

☒ 관련 사례

- ▶ △△시의회 A의장은 자신의 지역구 관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1인당 8천만~1억원씩 총 6억2천만 원을 수수하고, 채용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사립학교 이사장 등에게 청탁
- ▶ △△도의회 B의원은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뜻대로 인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장을 폭행

- ▶ △△군의회의 C의원은 승진 청탁 대가로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 ▶ △△시의회의 D의장은 의회사무처 D사무관이 명예퇴직하자 집행기관에 E(6급)를 후임으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집행기관에서 F(6급)로 배정하자 당초 자신이 요청한 대로 배치하라며 집행부 인사에 개입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도입 배경

-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방지
- 위원회의 특정 안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이익집단의 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제공 등 부패발생 소지 차단

내용 해설

-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지방의회별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의미
- 심의·의결
 - 제7조는 의원이 집행부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문·고문·검토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 자문·검토 등인지 여부는 위원회의 명칭이 아니라 의원이 해당 위원회 내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관련 사례

- ▶ △△시의회 등 4개 의회 의원 51명은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않음
- ▶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A의원은 지자체 집행기관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택시조합으로부터 1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 과정에 영향력 행사
- ▶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A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05년 △△구의 마을공원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로부터 2억 5천만원을 수수하였고, 같은 위원회 소속B의원은 △△구의 주택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개발업자로부터 1억2천만원을 수수
-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C의원은 2002년 도시계획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민원인 으로부터 2천만원의 금품을 수수
- ▶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Z사업을 소관하는 위원회임. △△도의회 A의원은 동 위원회 소속으로, △△도 감사실에서 개최한 △△도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Z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음
- ▶ △△도의회 A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으로 참석하여 “△△도교육청 금고지정 제안서 심의평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않음
- ▶ △△시의회 A의원은 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소관 부서인 △△시 평생학습과에서 추진 하는 “△△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 △△시의회 A의원은 환경위원회 및 도시위원회 소속으로, 소관 부서인 △△시 녹지 공원과에서 추진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시 도시공원 세부조정 계획 등 심의” 등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질의·답변

Q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와 관련하여,

- ① 동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의 ‘회피’가 강행 규정인지?
- ② 회피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심의·의결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A

- ① 동 규정은 특정 위원회와 관련된 이해관계로 인해 의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표현 형식에 있어서도 ‘회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심의·의결의 회피’를 의무화(강행 규정)하고 있음.
- ② 회피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안건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Q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제4조에서 제18조에 이르는 14개 행위기준의 준수 주체는 지방의회의원이므로 제7조에 따른 위원회등에서의 심의·의결 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 또한 지방의회의원임.

Q

농수산위원회(상임위원회) 소속 A의원이 집행기관의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A의원의 위원 위촉을 취소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예: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교체해야 하는지?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한 규정이며,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가부에 대한 규정이 아님.

Q

△△특별시(광역시·도) 감사관 소속 감사자문위원회에서 주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감사관 소관 사항 관장) 소속 의원이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 주민감사청구는 자치구청장이 행한 사무에 대하여 자치구 주민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사항임

A

주민감사청구의 내용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역 내 자치구청장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감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 하게 되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을 관장하는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자문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할 것임.

Q

지방의회 의원을 집행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당시에는 제7조가 정한 소관 상임위 소속이 아니었으나, 당해 의원이 재선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된 경우, 잔여 위촉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 의원을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여야 하는지?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의원의 위원 위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으로의 위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의원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함.

Q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한 심의·의결의 회피 대상 위원회에 해당하는지?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는 '위원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또는 협의체'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위원회등'이 행하는 실질적 활동의 성격·결과와 집행부 업무(의사결정)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협의체'가 집행부 업무와 관련되어 집행부의 업무 방향 등을 결정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동 규정에 의한 '위원회등'으로 보아야 함.

Q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집행부 위원회(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위원회등’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의원으로서 본연의 직무(소속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심의·의결의 회피’를 의무화한 것임. 여기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임.

Q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는 경우, 그 회피하는 방식

A

심의·의결 등의 회피와 관련한 회의의 방식·절차 등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 규칙 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Q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의결 회피 대상 사건이 상정될 시, 심의과정에서 해당 의원이 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지

A

지방의회의원이 심의·의결 회피 대상인 사건에 대한 심의 과정 중 의견 제시를 하는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행동강령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Q

A시 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A시 자치행정과 소속 B 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을 경우(A시 의회 행정위원회는 A시 자치행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함), 해당 의원은 B 위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는지

A

A시 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A시 자치행정과 소속 B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 B 위원회의 의안심사·예산심사 등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할 것이며, B 위원회의 사건이 A시 의회 행정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는 행동강령 규정 취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도입 배경

- 의원이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원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지방의회 풍토 정착
- 의원이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인(단체)이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내용 해설

- 직위 이용: 직위의 직접 이용이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원 본인에 의해서 직위가 직접적으로 이용된 경우를 말함
- 사적이익 : 법령이 보호하려는 법익 및 공익과 관련 없는 모든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

※ (예시)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우호적 평판 등

- 사적 이익이 반드시 불법적인 이익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위반행위의 성립

- (제1항) 의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반행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님
- (제2항) ① (자신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 도모 ② 소속 의회의 명칭 또는 직위 사용 ③ 공표·게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

■ 관련 사례

- ▶ △△시의회 A부 의장은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40여건, 1천5백여 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
- ▶ △△도의회 A의원은 2014년부터 2016년 초까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19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을 참석시켜 총 455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이권에 개입
- ▶ △△시의회 A의원은 2014.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무추진비 28만원을 집행, 같은 의회 D의원은 2014년 9월부터 1년여 기간 동안 C의원의 식당에서 총 6회 15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
- ▶ △△시의회 A의원은 2008년 △△시 △△구 △△동 자연녹지지역 내에 술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000여만 원을 수수
- ▶ △△시의회 A의원은 아파트 시행사에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압력 행사
- ▶ △△시의회 A의원은 △△시의 주민숙원사업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수주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행사
- ▶ △△시의회 A의원은 사회복지법인 허가과정 개입 및 금품 수수
- ▶ △△시의회 A의원은 83억원에 이르는 민간공사를 알선해준 대가로 아들의 선거자금 5,000만 원을 수주업체에 요구
- ▶ △△도의회 A의원은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기관 명칭과 의원으로서의 직위를 공표·게시함으로써, 공적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 ▶ △△구의회 A의원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홈페이지상 “△△구의회 의장”이라는 직위를 공표·게시함으로써 공적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

▣ 질의·답변

Q

의원이 경조사를 통지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명시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경조사를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의 직위를 명시하는 것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의원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의원이 경조사 등의 축·부의금 봉투에 자신의 소속 의회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A의회 의장이 관내 B기관의 연구소 창설일에 의회 명의로 화환을 보내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A

의원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 대표자격으로 그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Q

의원이 친족의 경조사에 의회명과 직위를 표시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A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또는 경조봉투에 기관명이나 직위를 기재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Q

의원의 경조사를 구청 직원이 구청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구청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구청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였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으며, 만약 의원이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구청 내부통신망에 본인의 경조사를 게시토록 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위반될 수 있음

참고 사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8조제2항) 적용 예시

◆ 위반 요건 (※ 아래 요건 모두 해당 시 위반)

- ① 사적 이익 ② 공표·게시 ③ 기관명칭 또는 직위 사용

※ 금지되는 행위

- 도로교통법 등 위반 시 경찰 등에게 처분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또는 직위를 알리는 행위
- 자신의 사적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하는 행위. 단, 프로필(이력)에 다른 경력과 함께 단순 기재하는 경우는 가능

※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 의장이 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기관명칭과 직위가 명기된 화분이나 화환을 보내는 행위 (① 미해당)
-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명기한 액자를 개인 집에 걸어 놓게 하는 행위 (② 미해당)
-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② 미해당)
- 변호사 사무실에 “사시 △△회 ○○○”로 명기한 화분을 게시 (③ 미해당)
- 경조사의 축·부익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경우(①·② 미해당)
-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② 미해당)
- 동창회, 결혼식 등에 기관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행위 (① 미해당)

제8조의2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도입 배경

- 공직사회 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
- 청탁금지법 시행(16.9.28.)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존재
 - 「공무원 행동강령」개정(18.1.16.)에 맞춰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공직자가 아닌 자’(민간)까지 확대하여 규율

▣ 내용 해설

- 청탁 :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
- 알선 :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
 - ※ **[판례]**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의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하는 알선·청탁 등 행위를 제한
 - 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의 유형(제3항)

1. (금전출연)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인사·징계)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업무상 비밀)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 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행위)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거래행위)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평가, 판정)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수상·포상)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 위반여부 판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 하며,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익도 포함)이나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
- 또한, 알선·청탁한 사항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 성립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와의 차이

- ▶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만을 규율 대상으로 규정
- ▶ 행동강령에서는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내부기준 위반 등을 포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일체의 알선·청탁 등을 금지

예시

유형	부정청탁 사례
1호 (금전 출연)	· 재원 마련 위해 사기업에 금전적 지원 요청, 출연 요구 · 기업에 비용을 부담케 하는 준조세 관행(미소금융, 미르재단) ·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요구
2호 (인사, 징계)	· 민간기업 사장(임원 등) 퇴진·교체 요구 등 인사에 간섭 · 회사 고문(자문)자리 요구 · 민간기업에 특정한 채용 및 보직 변경 요구
3호 (업무상 비밀)	· 미공개 기업정보(공시 전의 경영실적, 사업계획 등) 유출 · 경영정보, 영업비밀, 기술정보 제공 요청하여 경쟁사의 조직, 인력 정보 등 유출
4호 (계약행위)	· 사기업에 특정업체와 계약 체결하도록 요구 · 특정업체 납품 요구, 일감 배정 요구 · 특정업체의 광고, 협찬 요구(특정 업체 선정, 특혜 부여) · 특정 기업 기술 이용 요구(소프트웨어 개발) ·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
5호 (거래행위)	· 계약 조건 변경 · 대출금리 인하 요구 · 항공편 좌석 편의, 골프장 예약, 병원 입원 예약 · 협력사와의 납기기한 연장 및 입고가 인상 등
6호 (평가, 판정)	· 입학특혜 및 학사 혜택(성적 평가 등) 부여
7호 (수상, 포상)	· 특정인의 작품을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공모에 선정되도록 청탁 · 장학생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
8호 (감사, 조사)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를 조작, 위법사실 은폐

질의·답변

Q

의원이 공직 취임예정자(지자체장 당선자) 신분인 자에게 취임 후 당해 기관에 지인의 취업을 부탁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청탁 행위가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것이라면, 청탁의 직접 상대방(지자체장 당선자)이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으므로 지인의 취업을 부탁한 의원의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임

Q

의원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친구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A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의 대가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Q

의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직무관련 업체 대표를 불러 고향후배에게 소개하고 업체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신의 후배가 좋은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일을 맡겨 보라며 수차례 권유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A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한 내용의 실현 여부(업체가 필요한 자재의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제9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 도입 배경

- 의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도모하는 부정행위 방지

■ 내용 해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 정보의 귀속·출처를 불문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
 - 해당 직무의 수행자가 아니면 접근이 차단되어 한정된 관계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의 정보로서, 접근 및 열람에 있어 관련 의원이 일반인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할 것임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개별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적합한 세부 제한 기준(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마련하여 의회별 행동강령에 반영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관련 세부기준 마련 사례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상임위원회별 직무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의정활동요구자료,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2장

■ 관련 사례

- ▶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A의원은 2001년 8월 주거지구로 지정된 서구 △△동의 상가 부지를 2006년 경매를 통해 매입, 같은 블록 내 토지로 환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직무수행 중 해당 블록 내에서는 식당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정보를 지득하여, 2007년 7월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을 하고 주거지역보다 땅값이 비싼 체비지 중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대신 환지 받음
- ▶ 건설행정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이 지역 개발 및 도로 개설에 관한 정보를 지인에게 제공하여 투자토록 하는 행위

제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도입 배경

- 공·사 구분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근대적 관행 잔존
 -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동력 제공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공직사회 내 형성
- 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규율 필요

▣ 내용 해설

- 의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본인의 사적 필요에 따른 일을 직무관련자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로 구체화
 -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

관련 사례

- ▶ △△도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도의원 A는 연수에 동행하고 있던 사무처 여직원에게 새벽시간에 수 차례 ‘라면 심부름’을 시킴
- ▶ △△시의회 A의원은 주말에 거행된 자신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하여, 사무처 직원들에게 하객들이 내는 축의금의 접수 및 정리를 요구
- ▶ △△군의회 A의원은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본인의 세탁물을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도록 지시
- ▶ △△시의회 A의원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원에게 지인들과의 만남장소까지 자신의 차를 운전해 줄 것을 요구, 해당 사회복지무원은 휴가를 내고 약속 장소까지 의원을 데려다 주고 돌아옴
- ▶ △△군의회 A의원은 해당 군청 공무원들에게 목재를 자신의 집까지 가져다 줄 것을 요구, 공무원들은 관용차량(화물)을 이용하여 의원이 지시한 목재를 운반
- ▶ △△군의회 의원들의 사적 취미모임의 회원(의원)들은 해당 모임의 정기모임을 개최하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해당 모임의 수행을 요구함

제10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도입 배경

- 공직사회에서 공직자 상·하간, 상·하급기관간,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께 개선요구 증가
 -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이른 바 ‘갑질’을 적절히 통제(적발·처벌)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 부각
-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개념을 규정하고 갑질 금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 그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

내용 해설

○ ‘갑질’ 개념 규정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관련 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금지되는 ‘갑질’ 행위의 유형 구체화

- 조직 내부에서 또는 조직 외부(의원 vs 직무관련자, 의원 vs 소속·산하기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4개 유형으로 구체화

○ 직무와 관련 없는 : 법률, 시행령, 직제, 직제시행규칙 등에 따라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당한 일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 법률, 시행령, 직제, 직제시행규칙, 사무분장 등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통상적인 권한과 책임범위(통솔범위) 내에 없는 일을 지시·요구하는 경우

〈금지되는 갑질 행위(제10조의3 각호)〉

금지유형	금 지 행 위
(조직 내부) 직무관련 공직자에 대한 갑질	▶ 공직자에게 ①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②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외부 직무관련자) 외부 개인/ 기관·단체에 대한 갑질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소속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상/하 공공기관간)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보충적 금지) 조직 내·외부, 개인/ 기관·단체에 대한 포괄적 갑질	▶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관련 사례

- ▶ △△시의회 부의장 A는 직무관련자인 관내 ○○업체 대표에게 회식비용을 대신 지불토록 하고, 회식 후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
- ▶ △△도의회 A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인쇄물(책자) 계약 업체에게 회의장 다과 준비, 토론회 홍보 등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자신(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가
- ▶ △△시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집행부)에 의원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요구, △△시는 수 년 간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
- ▶ △△군의회 A의원은 직무관련자인 관내 업체에 본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새시를 교체하도록 함

■ 질의·답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폭언 등 인격모독 행위가 행동강령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에 포함되는지?



조직 내에서의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단순히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벌어진 원인,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인격 모독 행위가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4가지 유형의 갑질 금지와 관련하여 벌어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조직 내의 갑질을 신고한 의원·공무원에 대한 조직 내 왕따, 따돌림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는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준용규정)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부터 66조(책임의 감면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따라서, 조직 내의 행동강령상 갑질을 신고한 의원·공무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불이익 처분 일시 정지,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11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收受)를 금지하지 않는 금품 등의 항목에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6조(금품등 수수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입 배경

- 금품등 수수(요구·약속 포함, 이하 같음)행위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지방 정치 전체의 신뢰를 손상
 - 금품등 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 확보

▣ 내용 해설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주요 내용
 - 의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 ‘요구’는 의원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였는지는 불문
-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의원은 다른 의원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해서는 아니 됨.

○ 주요 요건 해석

- 동일인 :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로서, 동일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1회 :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1회’ 판단
 -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수개의 금품등 수수 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수수 가액 판단
- 회계연도 :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하며, 금품등을 수수한 의원이 소속한 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가 모두 소속 기관이 다른 공직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가액 산정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산정 기준
 - ‘금품등’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 금품등의 가액 산정 : 행위시(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판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 의원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7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다른 법령, 특히 「형법」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사유 성립 가능

①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사유

②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음

③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④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단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제공해야 하며,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단,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단체’의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가입, 탈퇴)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⑤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사유
- ※ ‘공식적인 행사’는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 (주최기관의 업무 및 참석자와의 연관성,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행사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일률적'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참석자 모두에게 동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
- ※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에 한정

⑥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사유
-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 ※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도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의미하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

⑦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시기·경위,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의장은 의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음.

(예시)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

- 외교관례상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결례가 되는 경우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장이 정한 최소한의 선물
-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주례를 한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금액의 답례품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물 또는 교통편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시간의 업무 협의 중 구내식당에서 식사 또는 간소한 외부 식사
 - 지도·감독기관 방문시 의례상 제공되는 음료
 -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일반 차량 접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보안 문제 등으로 지정차량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동반 이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교통 편의

사회상규 관련 판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도4732 판결)

 관련 사례

- ▶ △△시의회 의원 2명은 검찰의 S아파트 건축비리 수수와 관련하여 △△시 공무원들로부터 상품권 수수
- ▶ △△도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지방 공기업 △△△공사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수수

- ▶ △△의회 의장은 △△군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받고 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가 문제가 되자 ‘홍보용 제품을 받은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
- ▶ △△시의회 A의장은 2008년 의장 선거 전 28명의 시의원에게 3,500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
- ▶ △△시의회 B의원은 2008년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의장으로 지지해 준 의원 2명에게 지지 대가로 금품 제공
- ▶ △△도의회 의원 9명은 김 모 의원으로부터 “(도의회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수령
- ▶ △△시의회 A의원은 2008년 6월 한 골프장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시 △△면에 설치를 추진하는 골프장 공사 인허가 과정을 앞당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수수
- ▶ △△시의원 10여명은 야간경관사업 업체선정과 관련, 수백만 원을 수수
- ▶ △△시의원 2명은 창호공사 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 원을 수수
- ▶ △△시의회 A의장은 개발행위가 규제된 △△시 △△면 임야(9,410㎡)를 시청 허가부서 공무원에게 로비해 공장용지로 허가를 내주겠다며 모 개발 대표 G씨에게 1억원을 요구

▣ 질의·답변

(음식물)



같은 의회 소속의 동료 의원 간에도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같은 의회 소속으로 직무관련이 없는 동료 의원 간의 식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도 가능함.

Q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의 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는?

A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며, 총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Q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한 식사의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을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의원이 결제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A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이 지불한 경우,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이 3만원으로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음식물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A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Q 의원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물을 대접하는 경우 음식물 가액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A 식사 초대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Q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A 음식물 가액한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임.

(선물)

Q

가액기준을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공산품 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A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Q

의원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할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A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의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공산품)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한 후, 사고·의례의 목적으로 의원에게 선물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것임.

Q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단체에서 의회나 상임위원회 앞으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

A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신고나 반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경조사비)

Q 의원이 자녀 결혼식에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10만원)을 반환하여야 함

※ 축·조의금 : 5만원

축·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 10만원

축·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하는 경우 : 10만원

Q 관내 직무관련 업체 대표가 의원의 아들 돌잔치에 1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보내 온 경우 이를 받아도 되는지?

A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돌잔치의 경우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수수만 가능할 것임.

(기타 금품등)

Q 의원의 직무관련자인 관내 기업의 장학회로부터 당해 의원의 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장학금 지급이 사전에 정해진 명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규정, 통상적 지급 관계 등을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임.

Q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 여행을 위하여 외부기관·단체를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인지?

A 향응이란 접대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도 포함하는 개념임.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전망 좋은 콘도 예약을 부탁하여 이용하였다면 이는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콘도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임.

Q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는지?

A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허용될 수 있음.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Q

금품등 수수시 연간 금액 및 횟수 제한은 없는지?

A

행동강령 상 횟수 제한은 없으나,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임.

Q

외국정부가 자치단체 공무원, 의원,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 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해 자국 홍보를 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A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

Q

업무상 참가한 컨퍼런스에서 실시한 경품행사에 당첨되었는데 수령 가능한지?

A

불특정 다수인이 참석한 행사에서 공정한 방식의 경연·추첨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령 가능하나, 특정 대상 군(群)에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경품행사라면 행동강령 위반임.

제13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입 배경

- 의원이 국내외 활동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에 부당하게 금전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 제한
- 외부 기관·단체가 로비 목적으로 의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막고, 의원이 금전 제공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

■ 내용 해설

- 외부 기관·단체 : 해당 의원의 소속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시민단체 등도 포함
-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 제한
 - 의원은 동 조항에 따라 외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됨

- 개인 여행, 가족 여행 등 직무와 무관한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며, 그 지원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음

* 직무와 무관한 활동경비 지원액이 1회 1백만원 또는 회계년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

○ 사전 승인, 사후 보고서 제출

- 의장은 사전 승인 심사 시 필요할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 의원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 상황 공개

- 의장은 소속 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관련 사례

- ▶ △△시의회 A의장은 ○○추진위원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여비를 지원받아 일본, 이탈리아 등 국외활동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활동의 필요성 및 정당성 등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음
- ▶ △△도의회 A예결위원장 등 3명은 의장의 사전 승인 없이 관할 도 교육청으로부터 개인당 600여 만 원의 여비를 지원받아 ‘○○○ 우수학교 방문’ 국외 출장을 실시
- ▶ △△도의회의 A, B의원은 의장의 사전 승인 없이 도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부터 해외 영화제 참석 경비 1천여 만 원을 지원받아 국외 여행을 다녀 옴
- ▶ △△도의회 A의장 등 2명은 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 직무관련자(○○영화제 사무국)로부터 해외 관련 행사 참석 경비 1천여만원을 지원받아 국외활동 경비에 충당
- ▶ △△군의회 A의원은 □□협의회에서 실시한 국외공무여행에 여비를 지원받아 참여하면서 △△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관련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음

질의·답변

Q

○○○에서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지방의회의원에게 외국의 관련 시설을 견학시키고자 해외연수 초청을 해 왔을 경우 이에 따라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저촉되는지?

A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제13조제1항 본문),

-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3조제1항 단서)
- 참고로, 지방의회의원이 의장에게 국내외 활동 승인 신청을 한 경우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제22조제1항제2호).

Q

제13조제1항 중 ‘기관’과 ‘단체’의 범위는?

A

제13조제1항의 기관·단체란 해당 의원이 소속된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단체를 말함. 따라서 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공사·공단 등의 공직유관단체는 물론 바르게살기협의회나 NGO 등의 민간단체도 포함됨.

Q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해외연수비를 편성하였는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동 해외연수비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지?

A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지방의회 이외의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 다만, 동 조에 따른 의장의 승인과는 별개로, 행동강령 제11조(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도의회 의원들의 연구모임이 외부 기관(○○해양산업 협회)로부터 활동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아 당해 외부 기관이 주최하는 ‘○○○산업 발전방안 워크숍’에 참가하는 활동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위배되는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1항은 다른 기관·단체의 지원을 통한 의원의 직무관련 국내외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원칙), 예외적으로 사전에 활동의 사유, 경과, 지원 기관·단체, 지원내용을 분명히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의장의 승인 여부 판단은 의장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해당 활동의 사유, 경과, 지원 기관·단체의 성격, 지원내용의 적절성 등에 구속된다고 할 것임. 또한, 의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원 내용이 제11조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참고 사항(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0호, 2020.12.22., 일부개정, 2021.12.23. 시행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참고 사항(2)

외부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제도 운영기준

1. 외부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제도의 의의

가. 의의

- 지방의회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투명성 강화

나. 근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다. 공개 내용

- 관련 국내외 활동에 대한 의장의 승인 내용
-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
- 지방의회의원의 활동 사유·경과 및 활동보고서 등

라. 공개 방법

- 의회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주민의 정보 접근성·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을 권장
- 주민 요청 등 필요 시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 서류 비치 등을 병행

2. 외부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제도 운영기준

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전용 전자게시판 마련

구 분	내 용
① 게시판 명칭	▪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 게시판 명칭에 ‘외부 지원’ 표기 여부는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② 게시판 위치	▪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본메뉴 또는 ‘의정활동’ 메뉴의 소메뉴로 생성하는 것을 권장 (※ 붙임 [게시판 구성안 및 생성사례] 참조) - 홈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본메뉴로 생성하는 경우)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소메뉴로 생성하는 경우) ※ 이미 유사 게시판을 마련·운영 중인 경우, 해당 게시판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 〈예〉 해외 연수·교류 활동을 안내하는 게시판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게시판에 국내 활동상황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른 내용을 추가·확대하여 운영
③ 접속경로 단축	▪ 주민이 게시판의 내용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최소화 - 의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바로가기’, ‘빠른메뉴’ 등의 버튼을 생성 - 시인성(視認性)이 좋은 버튼 디자인을 채택하여 주민이 해당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
④ 게시판 구성	▪ 주민이 참가의원·지원기관·지원금액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항목을 확인하기 쉽도록 제시 ※ 붙임 [게시판 구성안 및 생성사례] 참조
⑤ 상세창 제공	▪ 게시판 화면에는 공개 대상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주민이 게시 내용을 클릭하면 상세창으로 이동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붙임 [게시판 구성안 및 생성사례] 참조
⑥ 검색 기능 제공	▪ 활동보고서 공개 여부별, 참가의원별, 지원기관별 등 검색자가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건별 검색 기능 마련

나.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운영

○ 자료 게시자 및 게시 시기

- 의장은 국내외 활동 참가 의원으로부터 활동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3일 이내에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에 관련 자료를 게시

○ 게시 대상 자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11. 2. 3.) 이후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의회의 예산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 지원금으로 수행한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상황 및 보고서

※ 의회 결정에 따라 의회 예산을 사용한 국내외 활동 상황도 함께 공개 가능

- 다음 자료는 파일로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
 - 의원이 신청한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 의장이 처리한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 승인서’
 - 의원이 작성한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보고서’

※ 국내외 활동보고서에 승인신청서와 승인서를 포함하여 하나의 파일로 작성 가능

○ 국내외 활동 지원비

- 해당 국내외 활동에 지원된 비용 일체
- 여비·활동비 등과 숙박시설·음식점 이용권, 입장료 및 기타 현물이 함께 지원된 경우, 해당 이용권·현물 등도 제공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산정하여 지원액에 합산
- 금액 단위는 의회 자율로 결정하여 명기(원·천원·백만원 등)

다. 행정 사항 : 게시판 구축 사실 및 변경 사항 통보

○ 게시판 구축 사실 통보 : 구축 완료 즉시

○ 게시판 관련 변경 사항 통보: 변경 후 1주일 이내

3.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구성

가. 게시판 안내문(예시)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 ○○도(·시·군·구)의회 의원 모두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 - 의회별 자체 행동 강령이 제정된 경우 해당 조문 명기)에 따라 소속 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상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외부 지원에 따른 국내외 활동 상황 외에 의회 예산을 사용한 경우도 함께 공개 가능
(의회 자율 결정)

연번	참가 의원	활동 기간	활동 개요	활동비 (원)	지원 기관	활동보고서		게시 일자
						공개	비공개	
1	장길산 홍길동	2012.01.06. ~ 2012.01.20.	(활동 내용 요약)	123,456,789	(지원기관명)	○ (보고서 등 파일 첨부)		2012. 01.30.
2							○ (비공개 사유 명기)	
⋮								
⋮								

나. 게시판 생성 사례(예시)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게시판 생성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의정활동’ 메뉴의 소메뉴로 생성)

의정활동
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본회의장의석배치도
- 연설문
- 포토갤러리
- 해외교류활동
- 의사일정
- 의회동영상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개의 글이 있습니다. (1/1 페이지)

전체
참가의원

검색

번호	참가의원	활동기간	활동개요	활동비(원)	지원기관	활동보고서	게시일자
2	가의원, 나의원	2012.03.29 2012.03.31	장래인 봉사활동...	1,000,000	**군청	비공개 [공공기관의...]	2012.03.28
1	다의원, 라의원	2012.03.21 2012.03.31	회는 청...	1,200,120	**시청	공개 [국]	2012.03.21

1

○ 상세창 연결 기능 설정

- ‘참가의원’, ‘활동개요’, ‘활동보고서’ 칼럼에 상세창 연결 기능 부여

의정활동
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본회의장의석배치도
- 연설문
- 포토갤러리
- 해외교류활동
- 의사일정
- 의회동영상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개의 글이 있습니다. (1/1 페이지)

전체
참가의원

검색

번호	참가의원	활동기간	활동개요	활동비(원)	지원기관	활동보고서	게시일자
2	가의원 나의원	2012.03.29 2012.03.31	장래인 봉사활동...	1,000,000	**군청	비공개 [공공기관의...]	2012.03.28
1	다의원, 라의원	2012.03.21 2012.03.31	회는 청...	1,200,120	**시청	공개 [국]	2012.03.21

1

○ 비공개 상세창

의정활동

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 본회의장의석배치도
- 연설문
- 포토갤러리
- 해외교류활동
- 의사일정
- 의회동영상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의원	가의원, 나의원	· 활동기간	2012.03.29~2012.03.31
· 활동비	1,000,000	· 지원기관	**군청
· 공개/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장애인 봉사활동 참여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에 따른 국내외 활동 상황 외에 의회 예산을 사용한 경우도 함께 공개 가능

[▶ 목록](#)

○ 공개 상세창

의정활동

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 본회의장의석배치도
- 연설문
- 포토갤러리
- 해외교류활동
- 의사일정
- 의회동영상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의원	다의원, 라의원	· 활동기간	2012.03.21~2012.03.31
· 활동비	1,200,120	· 지원기관	**시청
· 공개/비공개	공개		
· 첨부	test.hwp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 단체로부터 여비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에 따른 국내외 활동 상황 외에 의회 예산을 사용한 경우도 함께 공개 가능

[▶ 목록](#)

○ 검색 기능 제공(검색 조건 : 활동보고서 공개·비공개)

의정활동

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본회의장의석배치도
- 연설문
- 포토갤러리
- 해외교류활동
- 의사일정
- 의회동영상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개의 글이 있습니다. (1/1 페이지)

전체
공개
비공개
참가의원
검색

번호	참가의원	활동기간	활동개요	활동비(원)	지원기관	활동보고서	개시일자
2	가의원, 나의원	2012.03.29 2012.03.31	장애인 봉사활동 ...	1,000,000	**군청	비공개 [공공기관의...]	2012.03.28
1	다의원, 라의원	2012.03.21 2012.03.31	회의 ...	1,200,120	**시청	공개 [국립...]	2012.03.21

◀
▶
1
▶
▶▶

○ 검색 기능 제공(검색 조건: 참가의원·지원기관)

의정활동

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본회의장의석배치도
- 연설문
- 포토갤러리
- 해외교류활동
- 의사일정
- 의회동영상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 홈 > 의정활동 > 국내외 활동상황공개

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수행을 약속드리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 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개의 글이 있습니다. (1/1 페이지)

전체
참가의원
지원기관
검색

번호	참가의원	활동기간	활동개요	활동비(원)	지원기관	활동보고서	개시일자
2	가의원, 나의원	2012.03.29 2012.03.31	장애인 봉사활동 ...	1,000,000	**군청	비공개 [공공기관의...]	2012.03.28
1	다의원, 라의원	2012.03.21 2012.03.31	회의 ...	1,200,120	**시청	공개 [국립...]	2012.03.21

◀
▶
1
▶
▶▶

제14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삭제
-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7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7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 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도입 배경

-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고액의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 금품 수수 수단이나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는 등 민·관 유착요인으로 작용
-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이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등의 부패 요인을 차단
- 지나친 외부강의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를 지급하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조리 방지

내용 해설

- ‘외부강의등’이란 의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

※ ‘의원의 직무’는 ‘의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 행동강령 규율대상인 강의·강연 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하며,
-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함

※ 신문·잡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검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
- ▶ 사회자와의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 ▶ 서면심사·서면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
-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
- ▶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 등 행위

○ 외부강의등의 신고

-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도 가능

※ 신고를 할 때 의원은 자신의 인적사항, 요청자 또는 요청기관·단체의 이름, 요청 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액수, 강의 주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사례금 총액 또는 상세 명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을 일정기간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 일괄신고 가능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
-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 단,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외부강의등의 제한

-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사후신고의 경우 해당 외부강의등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한할 실익이 없으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외부강의등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그 의원이 장래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것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음

※ 의원은 횟수 상한을 초고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수수 제한

- 의원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초과 사례금) 수수 금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라 의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의회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의원은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하여 신고 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함

※ 의원이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지급주체	외부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1회 초과 인정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문		○
다른 경우	불문			○

▶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 외부강의등 일자가 같은 경우

- 대상 및 내용(주제)이 동일하면 사례금을 1회 기준으로 지급
-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외부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 외부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관련 사례

- ▶ △△시의회 A의원은 언론사에서 주최한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고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례금을 받았으나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 ▶ △△도의회 B의원은 C연구원이 주최한 자문회의에 2회 참석한 뒤 사례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 ▶ △△도의회 C의원은 D연구원이 주최한 직무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례금을 수령하였고, 토론회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뒤에 해당 사실을 신고함
- ▶ △△군의회 E의원은 F협회가 주최한 직무관련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후 사례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질의·답변

Q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다만,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로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를 2년 간 받기로 했는데, 이러한 수입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직접적인 강사료 외에 저작권료, 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받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동강령상 신고대상이 아님.

Q 책을 집필하는 것이 기고에 해당하는지?

A 책을 집필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신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출강(저글링을 잘하여 퇴근 후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한 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을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강의 등의 경우 의회별 행동강령 상 별도의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전 신고 대상은 아님.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의원이 소속 의회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초청기관에서 지급한 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의회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를 이중지급 받는 행위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행동강령상 신고 대상이 아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실수령액인 세후(稅後) 금액인지?



세전(稅前) 금액을 기재하면 됨.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 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의 행위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의원이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교 강의를 나가는 경우 매번 신고해야 하는지?



월(연) 평균 횟수와 1회 평균 시간을 기재하여 일괄신고 하는 것도 가능함.

제15조 영리행위의 신고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도입 배경

-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 방지
- 자신의 영리행위로 인하여 직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를 의원 스스로 사전에 통제

☑ 내용 해설

- 신고 대상: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 새로이 영리행위를 하려는 의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영리행위를 하고 있던 의원이 상임위 변경 등으로 기존의 영리행위와 현행 업무 간에 직무관련성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
- 신고 기관: 의회 의장

☑ 관련 사례

- ▶ △△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은 자신의 토지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여 매월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그 영리행위가 자신의 직무(불법 건축물 단속 등을 담당하는 집행부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예산 심의 등)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
- ▶ △△시의회 B의원은 ○○산업 대표 등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사업(영리행위)을 영위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음

- ▶ △△시의회 C의원은 용역 입찰과정에서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자신이 대표를 맡은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함
- ▶ △△구의회 B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노인복지관에서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횡령
- ▶ △△도의회 C의원은 수건가게를 개업하면서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있는 기관을 상대로 판매

■ 질의·답변



현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A의원이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은 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소속 지방의회 의장에게 당해 임대업에 대한 영리행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 도는 조례에 의해 제한되는 영리행위가 아니더라도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문의하신 '임대업'이 의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도입 배경

- 경조사비를 명목으로 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부당·편법적 금품 수수를 방지함으로써 의원의 직무공정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

내용 해설

-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 ※ 승진, 전보, 출산, 돌, 회갑, 칠순 등은 행동강령 상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도 축하금품 등의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
 - 친족,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
 -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혈족, 인척(민법 제767조)
 - ※ 시·도 및 시·군·구청, 각급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소속 직원은 제2호의 소속 직원에 해당되지 않음
 -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 경조사 통지 방법

-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 : 통지방법상 제한 없음.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 ※ 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 ※ 방송 : 「방송법」 제2조제1호(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제4호(중계유선방송), 제10호(전광판방송)의 규정에 따른 방송
 - ※ 신문·방송의 경조사 관련 내용을 직무관련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 제2호에 따른 의원·직원만 사용하는 전자통신망(인트라넷, 내부메시지 등)

■ 관련 사례

- ▶ △△시의회 A의장은 평소 친분이 있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청첩장을 작성·발송. 그 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가 포함되어 있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를 위반
- ▶ △△시의회 A의원은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일선 공무원들의 집으로 청첩장을 대거 발송, 공무원노조가 '시의원이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일면식도 없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대거 발송한 것은 부조금을 노린 치졸한 행위이며, 공무원의 개인정보인 집주소를 유출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성토
- ▶ △△군의회 B의장은 관내 업체와 건설업자들에게 아기 돌잔치 참석장을 보내어 수십개의 금반지와 3만원에서 10만원에 이르는 축의금을 수령
- ▶ △△군의회 A의원은 의회사무과 B 공무원에게 경조사 관련 글을 인트라넷(집행부 직원도 열람 가능)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였고, B 공무원은 A의원의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인트라넷 게시판에 등록하였음
-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C의원은 자녀 결혼을 앞두고 결혼 사실을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회람토록 하고 시청의 각 실과에까지 알림장을 돌리게 함.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시켜 청첩장 주소록을 작성케 하고 시청 실국장과 본인이 속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직접 청첩장을 돌리도록 하는 등 물의 야기

- ▶ △△시의회 B의장은 △△시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자녀 결혼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무차별 발송, 결혼 하객몰이라는 비난 여론 고조

질의·답변

Q 의회 의원과 집행기관(도·시·군·구청과 그 소속 기관 및 각급 교육청 등) 직원이 동일한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경우

A 해당 인트라넷 경조사 게시판에 의원 경조사를 게재할 경우 의원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는 집행기관 직원도 볼 수 있게 되므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됨
⇒ 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 게시판을 생성하거나 사내 메시지 등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

Q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이 가능한지?

A 일반인이 접속 가능한 사이트 등에 의원의 경조사를 게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며, 해당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만이 경조사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한하여야 함

Q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와 관련하여,

- ① 의원이 되기 전 구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것도 불가능한지,
- ② 의원이 아닌 의회 소속 직원이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구청 직원들에게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가능한지,
- ③ 구청 직원들이 주변의 소문을 듣고 결혼식장을 찾아온 경우에 추후 내부 통신망을 통해 답례의 글을 띄우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

A ① 의원이 되기 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직원이라 하더라도 경조사를 통지할 때 해당 의원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다면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됨
②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여서는 아니 됨. 이 경우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는 경조사 통지자(의회 소속 직원)가 아니라 경조사의 주체(의원)를 기준으로 판단. 의회 소속 직원이 의원의 경조사를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 있음(위반 사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이)

- ③ 해당 기관의 내부통신망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의 규율 사항이 아님



구청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 해당 구청 관할 지역구의 구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 ①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구청 직원들의 경조사를 알게 하기 해당 구청 내부망의 직원 경조사 사항을 구의원에게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 ② 구의원의 경조사를 해당 구청 직원(공무원)들만 열람이 가능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 ① 내부망의 공유 여부는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임. 참고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제3호가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내부통신망에 구청 직원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② 구청 직원이 이용하는 게시판을 통해 구의원의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해당 게시판을 통해 구의원의 직무관련자인 집행기관 직원도 볼 수 있게 되므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또한, 해당 구의원의 지시 또는 부탁 없이 구청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구의원의 경조사를 게시하는 경우, 이를 게시한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임



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현재는 직무관련자 아닌 경우 통지 가능한지?



직무 관련이 없어진 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행동강령상 제한되지 않음.



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봄. 다만 신문·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의원이 자신의 경조사를 집행부 직원들에게 통지하는 것은 가능한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소속 공무원은 의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집행부 직원들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임



SNS에 경조사를 올리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SNS를 통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신문·방송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조사를 알리는 형태라면 행동강령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

제18조 성희롱 금지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입 배경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성희롱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여 의원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을 스스로 삼가도록 주의 환기
- 의회 내 성(性) 소수자인 여성의원의 적극적 직무 여건 조성

▣ 내용 해설

-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희롱 행위 금지 대상자: 의원 또는 소속 직원
 - 성희롱 피해 대상자는 여성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여성(남성)의 남성(여성)에 대한 성희롱 행위나 동성에 대한 성희롱 행위도 금지됨

▣ 관련 사례

- ▶ △△시의회 A의원은 워크숍 술자리에서 시청 공무원 B의 손을 강제로 잡고 억지로 술을 먹이고, 자신의 방 열쇠를 B의 손에 쥐어주며 “숙소가 불편하면 내 숙소에 와서 자라”고 수 차례 얘기하는 등 B를 성희롱함
- ▶ △△시의회 C의원은 회의 도중 동료 여성의원인 D의원을 겨냥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여 D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함

- ▶ △△군의회 E의원은 군청 계약직 여직원 F에게 “(누드) 사진을 찍자”는 등의 발언을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결정을 당한 데 이어 시내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F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하여 고발당함
- ▶ △△시의회 부의장인 G의원은 모 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시장 부인 H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부의장직을 사퇴하였으며 H로부터 기소당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1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7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장으로 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도입 배경

- 「지바회의의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의 적정·원활한 처리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내용 해설

- 신고 주체 : 누구나 할 수 있음
 -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 신고인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신고 수단(우편, 인터넷, 방문 등)과 신고 처리 기간(예: 60일) 등은 의회별 행동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위반 행위 신고 편의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지바회의의원 행동강령」 관련 신고·상담창구 개설 권장
 - 무고(誣告)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하여 처리 하는 것을 권장
-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내부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2022년 7월 15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같음함(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 신고 접수 및 처리

- 의장이 소속 의원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위반 여부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음

- 처리 절차

- 신고서 및 해당 의원의 소명자료 검토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요청(선택)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위반 확인 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소속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의장은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신고자 보호

- 의장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을 받을 수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보호조치 등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같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고,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 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 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 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질의·답변

Q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가 되는지?

A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무고성 신고 등에 의한 선량한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익명의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Q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A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보장, 신분 보장 및 신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20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5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5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3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도입 배경

- 의원(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포함)이 제11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의 신고·처리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법령 위반·처벌 위험으로부터 보호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자발적 준수·실천 유도

- 의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에 관한 혼란 방지

▣ 내용 해설

○ 수수 금지 금품등

- 의원이나 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 신고 방법 : ① 의장에게 ②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③ 지체 없이 신고
- 신고 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제공자 인적사항, 수수 금품 등의 종류·가액·반환 여부 등

○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

- 반환 기한(시한) : 금품등을 받거나(의원)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지체 없이 반환 또는 인도
- 여기서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체 없이 반환·인도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인도 사유 : 반환하여야 할 금품등이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을 의장에게 인도하여야 함

○ 금품등 반환 비용의 청구

- 금품등을 반환한 의원은 소요 비용에 관한 증명(택배 영수증 등)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반환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음

○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 의장은 금품등을 인도받은 즉시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한 후 ‘금품등 인도 확인서’를 작성·관리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공직자행동강령 운영 지침 제19조제3항 각 호 기준에 따라 처리
- 처리 결과는 금품등의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인도자에게 통보

○ 금품등 인도·처리 상황의 기록 및 관리

제21조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교육)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도입 배경

-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상담, 위반행위 신고사건의 접수·조사 처리 등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의장의 총괄 책임과 권한을 명시

▣ 내용 해설

-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상담 및 위반 신고 접수·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 의장은 행동강령 교육·상담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제22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 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5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의 비밀 유지) 의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사무처(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1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내용 해설

- 의원 간 이해관계나 당파적 이익에 의한 왜곡·편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운영 자문기구 설치 근거 규정 마련
- 지방의회별로 자문위원회의 소관 사항, 구성, 위원장 선출, 제척·회피 및 의결 정족수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

제23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도입 배경

- 지방의회별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 자율권 부여
- 의회별 행동강령의 내용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방지에 관한 최소한도의 통일성 유지 장치 마련

❏ 내용 해설

-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 제정 형식 : 조례
 - 제·개정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의회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의회에 시정 요청

❏ 의회별 행동강령에서 추가·구체화할 사항

- 직무관련자의 범위(제2조제1호)
- 금지되는 민간인에 대한 알선·청탁(제8조의2제3항제9호)

- 상임위원회별 직무관련 정보 이용 제한 기준(제9조제2항)
- 의회별로 정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상한(제11조제3항제1호)
-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제11조제3항제7호)
- 외부 지원 국내외 활동보고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제13조)
-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제14조제7항)
- 소속 의원에게 대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제19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0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제22조) 등

제24조 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 행동강령 제도나 운영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의회별 행동강령 우수 제도 및 운영 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의회 간 행동강령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관련 법령 등

제3장

관련 법령 등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22. 6. 2.] [대통령령 제32662호, 2022. 6.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7., 2018. 12. 24.>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6. 9. 27.>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 ② 삭제 <2016. 9. 27.>
-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삭제 <2022. 6. 2.>

제4조의2 삭제 <2022. 6. 2.>

제4조의3 삭제 <2022. 6. 2.>

제4조의4 삭제 <2022. 6. 2.>

제4조의5 삭제 <2022. 6. 2.>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12. 24.]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2. 6. 2.>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2.>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12. 24.]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6. 9. 27.]

제12조 삭제 <2016. 9. 27.>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2022. 6. 2.>

③ 삭제 <2020. 4. 7.>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22. 6. 2.>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전문개정 2016. 9. 27.]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 9. 27.]

제6장 보칙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9. 27.>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2662호, 2022.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

(의회명) 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의회명)의회 의원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회명)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나. ○○○(자치단체명)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게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1) 의장은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이외의 자로서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직무관련자 범위에 추가할 수 있음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삭 제 <2022.6.2.>

제4조의2 삭 제 <2022.6.2.>

제4조의3 삭 제 <2022.6.2.>

제4조의4 삭 제 <2022.6.2.>

제4조의5 삭 제 <2022.6.2.>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²⁾

2) 의장은 제1호부터 제8호 이외에 금지되는 알선·청탁 행위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음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³⁾

제10조 삭 제 <2022.6.2.>

제10조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 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

3) 의장은 제9조제2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를 상임위별로 정할 수 있음

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 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⁴⁾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4) 의장은 의회·의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收受)가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음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삭 제 <2016.9.28.>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⁵⁾

제14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4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 <2022.6.2.>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5) 의장은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하여야 하며, 제14조제8항 규정 여부(횟수 제한 도입 여부)는 선택사항임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⁶⁾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6)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⁷⁾

제24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의장은 제23조제3항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음

-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25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명)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의회 사무처(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1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②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4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 관련자,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4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합계		명		금액	부담기관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7호 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명	직위	정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별지 제9호 서식] (제14조제6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회의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기고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장

관
련
법
령
등

■ [별지 제10호서식] (제14조제7항, 제20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장

관
련
법
령
등

■ [별지 제13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	---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 [별지 제14호 서식] (제20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제20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16호 서식] (제20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17호 서식] (제20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 2022. 6.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12., 2016. 9. 27., 2018. 1. 16., 2021. 11. 30.>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종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6. 9.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 9.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 삭제 〈2022. 6. 2.〉

제5조의2 삭제 〈2022. 6. 2.〉

제5조의3 삭제 〈2022. 6. 2.〉

제5조의4 삭제 〈2022. 6. 2.〉

제5조의5 삭제 〈2022. 6. 2.〉

제5조의6 삭제 〈2022. 6. 2.〉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1. 5.]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 16.>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 삭제 <2022. 6. 2.>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6. 2.>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18. 12. 24.]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 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2022. 6. 2.>

③ 삭제 <2020. 4. 7.>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16조 삭제 <2022. 6. 2.>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전문개정 2016. 9. 27.]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8. 12. 31.>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 9. 27.]

제6장 보칙 <개정 2008. 12. 31.>

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 9. 27.>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제32661호, 2022.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시행 2022. 8. 5.]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90호, 2022. 8. 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 부·처·청의 장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한한다)의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4. “지방의회의 장”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5. “공직유관단체의 장”이란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6. “기관별 행동강령”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정·시행하는 행동강령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4조(형식) ①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의회의 사무처, 사무국 또는 사무과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 2. 지방의회 :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의원 행동강령을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행동강령”을 포함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3. 공직유관단체 :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표 1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이라 한다)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관별 행동강령에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수(收受)를 금지하지 않는 금품등의 항목에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금품등 수수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8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7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8조제7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5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5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8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7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

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1조제2항에 따라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 보관·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19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제23조(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말한다)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6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장으로 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예규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9조(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청렴포털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90호, 2022. 8. 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발 행 인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연 락 처 : 044-200-7670

홈페이지 : <https://www.acrc.go.kr>